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5-46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과태료를 미납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압류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1. 건　　명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2.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소재지	위반사항	압류 대상	송달사유
우관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91번길 18(재송동)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내에서 야영 및 인화물질 소지로 인한 과태료 미납	자동차 14두4628	폐문부재

ㅇ 자동차 사용본거지 : 소재지와 동일

4. 공고기간 : 2015. 11. 16. ~ 11.2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